서울특별시 마포구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

(대표발의: 신 종 갑 의원)

의 안 번 호 23-74

발의년월일: 2023. 6. .

발의자: 신종갑, 김승수, 권인순, 오옥자, 이상원, 장정희, 채우진, 한선미

1. 제정이유

보육교직원들이 건강하고 안정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보육교직원의 인권을 신장하고, 나아가 우리 아이들에 대한 보육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함

2. 주요내용

- 가. 보육교직원의 권익보호를 위해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할 책무(안 제3조)
- 나.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(안 제5조)
- 다.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한 실태조사 실시에 관한 사항(안 제6조)
- 라.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위원회 설치·운영에 관한 사항(안 제7조)
- 마. 보육교직원 권익보호를 위한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(안 제8조)

3. 관계법령

가. 영유아보육법 제4조(책임), 제11조(보육계획의 수립 및 시행)

4. 조 례 안 : 붙임

5. 예산조치 : 없음

6. 기타사항

가. 입법예고: 2023. 5. 18. ~ 5. 23.

나. 의견제출: 없음

서울특별시 마포구 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 마포구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강하고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과 보육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- 1. "보육교직원"이란 어린이집 영유아의 보육, 건강관리 및 보호자와의 상담, 그 밖에 어린이집의 관리·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서울특별시 마포구 내의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와 그 밖의 직원을 말한다.
- 2. "피해 보육교직원"이란 어린이집 보육업무와 관련하여 지위 또는 관계 등의 불평등한 상황으로 인해 신체적·정신적 피해를 받은 보육교직원을 말한다.
- 3. "갑질"이란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사람에게 신체적·정신적 고통을 가하거나 부당한 요구나 처우를 하여 건전하고 건강한 근무환경을 해치는 행위를 말한다.
- ②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「영유아보육법」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- 제3조(구청장의 책무) ①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(이하 "구청장"이라 한다)은

보육교직원의 권익보호를 위해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,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.

- ② 구청장은 보육교직원이 존중받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.
- 제4조(다른 조례와의 관계)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- 제5조(기본계획의 수립 등) ① 구청장은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5년 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및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"이라 한다)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 -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 - 1.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및 지원에 대한 기본 목표 및 추진방향
 - 2. 보육교직원 권익보호를 위한 지원 정책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
 - 3. 보육교직원 권익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
 - 4.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및 지원을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
 - 5. 그 밖에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 - ③ 구청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 - ④ 구청장은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할 경우 보육교직원, 관련 법인 및 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이를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- ⑤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은 「영유아보육법」에 따른 보육계획의 수립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.
- 제6조(실태조사) 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보육교직원의 근무여건 및 환경, 인권침해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.
 -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에 따라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.
- 제7조(보육교직원 권익보호 위원회) ① 구청장은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 및 지원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를 설치·운영해야 한다.
 - 1.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
 - 2. 제6조에 따른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
 - 3. 제8조에 따른 사업에 관한 사항
 - 4.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- ② 위원회는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보육 조례」에 따른 서울특별시 마포구 보육정책위원회에서 대신할 수 있다.
- ③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.
- 제8조(사업) ① 구청장은 보육교직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.

- 1. 보육교직원 고충상담 및 심리적 안정 지원 사업
- 2. 보육교직원에 대한 권익 보호 관련 교육 지원 사업
- 3. 보육교직원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 지원 사업
- 4. 그 밖에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사업
-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지원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.
- 제9조(협력체계 구축) 구청장은 보육교직원의 권익보호 및 지원을 위한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보육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【관계법령】

영유아보육법

[시행 2022. 12. 11.] [법률 제18899호, 2022. 6. 10., 일부개정]

제4조(책임) ① 모든 국민은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할 책임을 진다.

-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자와 더불어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할 책임을 지며, 이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 <개정 2013. 1. 23.>
- ③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(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. 이하 같다)은 영유아의 보육을 위한 적절한 어린이집을 확보하여야 한다. <개정 2011. 6. 7., 2011. 8. 4., 2020. 12. 29.>
-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육교직원의 양성, 근로여건 개선 및 권익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 <신설 2015. 5. 18., 2020. 12. 29.> [전문개정 2007. 10. 17.]

제11조(보육계획의 수립 및 시행) ① 보건복지부장관, 시·도지사 및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보육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경우에는 중앙보육정책위원회, 그 밖의 경우에는 각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어린이집 수급계획 등을 포함한 보육계획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 이 경우 보육계획에는 국공립어린이집의 공급에 관한 계획및 목표가 포함되어야 한다. <개정 2008. 2. 29., 2010. 1. 18., 2011. 6. 7., 2013. 8. 13.>

- ② 보건복지부장관, 시·도지사 및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보육계획의 수립·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어린이집, 보육 관련 법인·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, 그 요청을 받은 어린이집과 보육 관련 법인·단체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. <개정 2008. 2. 29., 2010. 1. 18., 2011. 6. 7.>
- ③ 제1항에 따른 보육계획의 내용, 수립 시기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서울특별시 마포구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

○ 제8조 사업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○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」제12조제2항 제2호에 해당

3. 미첨부 사유

○ 의안의 내용이 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
4. 작성자

작성자 이름	복지동행국 가족행복지원과 정혜민
연 락 처	02-3153-8912